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2026년
10월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이행에 관한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1일, 베트남은 「외국 공문서의 인증 요구 폐지에 관한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시행령 제293/2026/ND-CP호를 시행했다. 해당 시행령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발급, 확인 및 상호 인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협약 적용 대상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유효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기존 영사합법화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적용 범위

- 아포스티유 적용 대상에는 행정문서, 공증문서, 사문서에 대한 공식 인증, 사법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된다.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와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LOA)도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

- 영사합법화 절차 간소화: 유효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추가 영사합법화나 별도의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문서는 기존 영사합법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인증 범위: 아포스티유는 서명의 진위, 서명자의 자격 및 문서에 날인된 인장·도장의 출처를 인증하며, 문서 내용이나 제품의 안전성 및 규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도 종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경과조치: 2026년 9월 11일 이전에 영사합법화를 완료한 공문서는 계속 유효하며, 소급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업계 영향

- 이번 조치로 베트남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제품 신고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형식적 진위만을 인증하므로 제품 신고에 필요한 자료, 성분 및 표시사항은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의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vietnam-implements-decree-on-the-apostille-convention>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진흥 및 화장품법 개정안 공포

2026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소관의 「화장품산업 진흥 및 지원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소관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번 법률은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법률은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새로운 법률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혁신 화장품기업 인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 **기본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산업 지원:**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연구개발, 지속가능한 포장재,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화장품 관리 체계 개선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관리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화장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와 규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south-korea-enacts-new-cosmetics-industry-promotion-act-and-amendment-to-cosmetics-act>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의무 면제 제품 및 원료 목록 발표

2026년 8월 31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Body, BPJPH)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되는 제품 및 원료를 규정한 결정 제301/2026호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면제 기준과 대상 목록, 신규 면제 대상 추가 절차를 규정하며,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면제 대상 및 분류 기준

원료의 유래와 특성에 따라 할랄 인증 면제 대상을 구분한다. 주요 범주에는 식물 유래 원료, 비도축 할랄 동물 유래 원료, 조류, 천연수 및 지정된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다.

- **식물 유래 원료:** 해당 원료의 유래와 가공 방식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동물 유래 원료:** 비도축 할랄 동물 유래 원료 등 지정된 범주에 대해 해당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조류·천연수 및 화학물질:** 결정의 부록에 명시된 목록과 분류 기준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 **유전자변형 식물 유래 원료:** 관련 식품안전 인증 또는 승인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 신규 면제 대상 추가 절차

기존 목록에 없는 제품이나 원료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경우, 제조공정 흐름도, 조성 정보, 분석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항목은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승인 및 목록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indonesia-releases-list-of-products-and-ingredients-exempt-from-halal-certification>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뉴질랜드 환경보호청, 장쇄 과불화카복실산(LC-PFCAs) 제한 조치 발표

2026년 9월 23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은 「유해물질 및 신규생물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Act)」 개정을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3종에 대한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장쇄 과불화카복실산(long-chain perfluorocarboxylic acids, LC-PFCA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제한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범위 및 제한 사항

이번 조치는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추가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제조·수입·사용 제한:** LC-PFCAs 및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규정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 대상이 된다.
- **예외 적용:** 특정 필수 용도 등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기존 제품 및 폐기:** 기존 사용 제품과 관련된 예외 및 폐기 요건은 해당 규정의 세부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new-zealand-announces-restrictions-on-lc-pfca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중국 NMPA,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사항의 적용 절차 명확화

2026년 10월 8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afety and Technical Standards for Cosmetics, STSC)」 개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2026년 제99호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등록·비안 제품과 기술심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제품에 대해 원료 목록, 미생물·유해물질 한도, 시험방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존 제품의 처방 변경

기존 등록·비안 제품은 변경 유형과 제품 안전성 및 효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기본 원료 및 사용량 변경:**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 평가 자료가 필요하며,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새로운 효능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 **향료 변경:**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 기준 또는 국제향료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IFRA) 기준에 대한 적합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처방 변경:**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시험 및 안전성 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시험 기준 및 자료 요건

- **미생물 및 유해물질 한도 변경:** 기존 자료가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자체 평가 후 제품 기준 갱신 가능, 미충족 시 재시험 및 변경 신청 필요
- **기존 효능 시험자료:** STSC 개정 시행 전 시험 등록이 완료된 자외선 차단, 기미·주근깨 제거, 미백 및 탈모 방지 효능 시험 대상 제품은 개정 시험방법에 따른 재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 **기술심사 중인 특수화장품:** 보완자료 제출 단계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원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china-finalizes-rules-for-implementing-revisions-to-the-safety-and-technical-standards-for-cosmetics-stsc>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인도, 화장품의 채식/비채식 원료 표시 자율화

2026년 9월 21일,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는 「법정계량(포장상품) 제4차 개정 규칙 2026」(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Fourth Amendment Rules, 2026)을 관보 고시 G.S.R. 826(E)로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비누, 샴푸, 치약 및 기타 화장품·세면용품에 적용되던 채식·비채식 원료 표시 의무를 삭제하고, 해당 표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됐다.



주요 표시 변경 사항

기존 규칙에서는 제품의 원료 유래에 따라 포장 전면에 표시하는 기호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관련 표시 의무가 완화되었다.

- 자율 표시 시 채식 원료 제품에는 녹색 점을 사용할 수 있다.
- 자율 표시 시 비채식 원료 제품에는 빨간색 또는 갈색 점을 사용할 수 있다.
- 적용 제품: 비누, 샴푸, 치약 및 기타 화장품·세면용품이 포함된다.
- 시행일: 2026년 9월 2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india-makes-vegetariannon-vegetarian-origin-symbols-voluntary-for-cosmetic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브라질 ANVISA, 수제 화장품 간소화 규제 체계 도입

2026년 10월 5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Brazilian Health Regulatory Agency, ANVISA)은 수제 개인위생용품·화장품·향수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정하는 결의안 RDC 제1045/2026호와 규제 지침 제474/2026호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제 제품에 대해 제품 등록·통지 및 사업자 운영 허가(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AFE) 요건을 면제하며,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범위 및 면제 사항

적용 대상

- **대상 제품:** 저위험 제품으로, 알코올 기반 향수, 방향초·방향 주머니·리드 디퓨저·스프레이, 고형 입욕제·바디 비누·샴푸·컨디셔너, 바디 오일·버터, 알루미늄염이 없는 스틱형 데오도란트 등 7개 범주가 포함된다.
- **제조 요건:** 제조자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수작업 생산이어야 하며, 안전성이 확립된 단순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 외주 생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외 대상:** 민감 부위·점막 또는 취약계층용 제품, 복잡한 반응이나 정교한 보존 시스템이 필요한 제품은 제외된다. 산업용 제품의 단순 충전·희석·재표시 및 키트 구성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측면	자격 기준
제품 위험	건강 및 미생물학적 위험이 낮아야 하며, 민감한 부위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해서는 안 됨.
조성 및 생산 공정	조성이 단순하고 안전한 사용 이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충전·희석·재라벨링 제품은 제외됨.
제품 기능 및 주장	기본적인 감각적·기능적 효능만 허용되며, 치료 목적이나 별도 안전성·효능 시험이 필요한 주장은 금지됨.
생산 규모와 관리	수작업 중심의 소규모 생산이어야 하며, 생산자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외주 생산은 하지 않아야 함.

규제 완화 및 준수 사항

- **면제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ANVISA 등록·신고 및 AFE(영업허가)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감독은 계속 적용된다.
- **표시 요건:** 제품명·브랜드, 제조자 정보 및 연락처, 성분, 제조일, 사용기한(최대 12개월), 제조 장소, 순함량, 필수 경고문구와 'PRODUTO ARTESANAL' 표시가 필요하다.
- **효능 표현:** 기본적인 감각·기능적 표현만 허용되며, 치료 목적이나 별도 시험이 필요한 효능 주장은 제한된다. 소비자 불만 접수 경로와 관련 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brazil-adopts-simplified-rules-for-artisanal-cosmetic-product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

파라과이 DINAVISA, 화장품 우수관리기준 인증서 자동 갱신 절차 도입

2026년 9월 30일, 파라과이 국가보건감시국(National Directorate of Health Surveillance, DINAVISA)은 화장품 및 가정용 세정·위생 제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BPFyC)과 우수보관·유통기준(BPAyD) 인증서 자동 갱신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 제409/2026호를 발표했다. 해당 절차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범위 및 신청 기한

해당 절차는 유효한 BPFyC 및 BPAyD 인증서를 보유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신청 기간: 인증서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만료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신청 방법: DINAVISApY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한다.
- 수수료: 자동 갱신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 갱신 제출자료

- 자체 점검 보고서:** 결의안 부속서 I에 따른 선서 진술 형식으로 제출한다.
- 시정조치 계획:** 자체 점검에서 부적합 또는 부분 준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 내용과 담당자 및 이행 기한을 포함해야 한다.
- 선서 진술서:** 사업장의 법정 대표자와 기술 책임자가 부속서 II에 따라 작성하며, 인쇄본과 전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조치 및 사후 점검

- **기한 미준수:** 만료일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요구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기존 인증을 상실하고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인증 만료 후 영업 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위 자료:** 자체점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누락한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사후 점검:** 자동 갱신 후에도 DINAVISA는 보건 위험 평가와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기반 점검을 계속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dinavisa-introduces-automatic-renewal-for-gmp-certificates>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